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1347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현, 김청환

피 고 1. C

2. D

3. E

4. F

5. G

변론 종결 2020. 5. 19.

판결 선고 2020.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639,999원 및 그 중 7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6. 2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1.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보증내용: 이 사건 하도급계약[아래 2.나.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 보험가입금액: 780,000,000원
- 보험기간: 2011. 6. 28. ~ 2011. 11. 30.(156일)

나. 피고들은 2011. 7. 14.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I은 2012. 3.경 H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78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I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H은2) 2013. 4. 30. I 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가합8461,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마. 위 법원은 2014. 12.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H의 공사 완공이 지연되었고, 공사 지연이 H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H은 I 에 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존재한다고판단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H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나2401), 2015. 11.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78901), 2018. 8. 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6. 1. 6. I에게 이 사건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7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구상채권 원리금은 2018. 6. 30. 기준 1,004,639,999원(= 원금 780,000,000원 +이자 224,639,999원)이다. 또한 위 보증약정에 따르면, 201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9%이다.

【인정근거】○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1,004,639,999원 및 그 중 원금7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지연은 발주처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하도급인인 I, 하수급인인 H의 공동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모든 책임이 H에게만 있다고 보아 I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구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2) H의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I 과 H이 체결한 2011. 6. 28.자 하도급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J 창원공장 가공, 단조, 터빈공장 크레인 제작및 보수, 이설, 설치, 시운전 일체 공사의 하도급계약으로서, 그 중 400/100톤(신설), 350/30톤(신설), 350/75톤(신설)

크레인(이하 통틀어 '신설크레인'이라 한다)의 각 납기가 2011. 9. 24., 200/50톤(이설) 크레인(이하 '이설크레인'이라 한다)의 납기가 2011. 9.30., 250/30톤(개보수) 크레인(이하 '개보수크레인'이라 한다)의 납기가 2011. 11. 30.인 사실, 2 I과 H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계약은 최고 없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3 위 계약상 총 공사대금은 4,290,000,000원이고, 지체상금율은 총 공사대금의 0.3%/일이며, 2011. 9. 24. 납기 미준수시 2011. 8. 30.부터 지체상금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4 H이 2011.9. 24. 납기(신설크레인의 납기)를 미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납기를 2개월 이상 경과한 2011. 11. 30.까지도 신설크레인 일부만 제작하였을 뿐 이설크레인 및 개보수크레인 관련 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여 총 공정율이 59.5%에 불과하였던 사실, 5 이에 I이 2011. 12. 14. H에게 위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6 위 통보를 받은 이후 H은 더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H의 공사 완성이 지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H은 I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채무불이행이 H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H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범위

나아가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하여 본다. H과 I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2011. 9. 24. 납기 미준수시 2011. 8. 30.부터 지체상금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체상금의 시기는 2011. 8. 30.이라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I은 신설크레인의

납기일인 2011. 9. 24.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2011. 10. 25.부터 2011. 6. 28.자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63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156일(2011. 6.28.~ 2011. 11. 30.) × 미완성 공사 비율 0.405(= 1 - 기성고 비율 0.595), 소수점 이하버림, 이하 같다]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해제 가능일인 2011. 10. 25.부터 63일이 되는 날인 2011. 12. 26.이다. 따라서 H은 I에게 지체상금으로 1,531,530,000원[= 공사금액 4,290,000,000원 × 0.3% × 지체일수 119일(2011. 8.30.~ 2011. 12. 2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원고가 I에 지급한 보험금이 I의 H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639,999원 및 그 중 78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6.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

1) 원고는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이 2019. 6. 29.이므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

2)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15.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3.3. 2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12. 10.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편의상 H의 관리인 내지 그 소송수계인이 한 행위는 모두 H이 한 행위로 기재한다.